

#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00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, 특히, 2016년도 발달장애인 부모회 시청 점거 농성시, ‘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’이 가장 큰 핵심 요구사항이었음
- 나. 연구용역 결과,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될 ‘이룸통장(가칭)’의 운영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, 그동안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에 경험이 많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여, 2017년 관련 사업비를 서울시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시복지재단
- 관련법령
  - 공통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 - 조 례
    - ▶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   - ▶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

## 나. 이룸통장 사업개요(안)

- 저축목적 ※ 중증 장애인의 실수요를 반영하고 미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
  - 장애와 관련된 사용, 자립생활을 위한 사용, 교육·문화·여가 활동을 위한 사용,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, 기타 등
- 저축기간 : 36개월
- 모집인원 : 1,000가구(예정, '17년 시범 결과에 따라 규모결정)
- 신청자격 : 34세 이하 「장애인 고용법」 상 중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% 이하
- '17.예산 : 2,000백만원

## 다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복지재단은 ‘이룸통장(가칭)’ 최적의 수행기관
  - 서울시 복지재단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대표 통장사업인 ‘꿈나래·희망플러스·희망두배 청년통장’을 도입부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통장사업 전문기관으로, 출시 예정인 ‘이룸통장(가칭)’의 수행기관으로 최적의 기관임
  - ‘서울시복지재단’은 당사자 욕구가 반영된 서울시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, 특히 복지시설 관리·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 시설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음. 서울시 최고의 복지 분야 전문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의 ‘이룸통장(가칭)’ 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출연이 필요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 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 전용

####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김희영(☎ 2133-7443)